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63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 윤상현 · 김선교 · 임이자

송석준 · 안철수 · 김 건

이주영 · 배준영 · 허종식

김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등 해상무역 중홍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도로, 항공, 항만 등 육·해·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261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 해사법원"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의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사법원	인천광역시
------	-------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11]

해사법원의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해사법원	전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u>특허법</u>	제2조(설치) ① 특허법
<u>원</u>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	원, 해사법원
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	
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	제4조(관할구역)
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	
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	
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u>.</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 <신 설></u>	9. 해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
	<u>1</u>